

홍보간행물 2018-0010

더 많은
혜택주는

2018 두루누리 가이드북

더 많은
혜택주는

2018 두루누리 가이드북

Contents

Chapter I	한 눈에 보는 두루누리 가이드북	05
	1. 사회보험이란?	06
	2.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	08
	3. 소규모 사업장 추가 혜택	10
	4. 사회보험 미가입신고센터	11
Chapter II	사회보험료 해결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3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14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15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16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17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19
Chapter III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25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26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7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28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절차	29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서식	31
	★ 사업주 지원혜택 산정표	35
Chapter IV	고용보험·국민연금 혜택은?	39
	1. 고용보험 혜택	40
	2. 국민연금 혜택	44
Chapter V	알면 도움 되는 TIP!	51
	1.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	52
	2. 퇴직연금제도	59
	3. 산재보상 서비스	60
	4.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63

더 많은 혜택을 주는
2018 두루누리 가이드북

한 눈에 보는 두루누리 가이드북

1. 사회보험이란?
2.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
3. 소규모 사업장 추가혜택
4. 사회보험 미가입신고센터

Chapter

I

1.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 의무가입 이유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맡는다면 보험사는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려고 할 수 있고, 사업주도 필요한 사람만 가입시키려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의무가입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고용 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1995년 시행>
산재 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1964년 시행>
국민 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써 소득이 있을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1988년 시행>
건강 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1977년 시행>

▶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국민 (18세~60세 미만)	국민 (나이제한 없음)
적용제외	①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현장 근로자	①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 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현장 근로자 ③ 상시근로자 1명 미만인 사업 ④ 연면적 100㎡(200㎡)이하 건축(대수선)공사	①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②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자	①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②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보험료율	1.55%	매년 업종별 고시	9%	6.7%(직장)

※ 18. 7. 1. 부터 소규모사업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알림
 *산재보험 적용제외 항목 ②, ③, ④ 폐지



2.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대상	근로자 수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0,000원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만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	지원방법	아래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지원 1. 사업주 계좌로 현금수령 2. 사회보험료 대납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수령만 가능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신청방법 안내

Tip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조리·음식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 한도)**를 제외한 금액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예시) 5명 미만 사업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경우
(월평균보수 160만원, 신규지원자 1명으로 가정)

월평균보수 160만원	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계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합계	276,000원	205,520원	104,560원	100,960원	+ 월 최대 130,000원 지원
고용보험 (90%지원)*	24,800원	22,320원	12,960원	9,360원	
국민연금 (90%지원)	144,000원	129,600원	64,800원	64,800원	
건강보험 (50%경감)**	107,200원	53,600원	26,800원	26,800원	
사회보험세액공제 (50%공제)	-	결산시 (다음연도) 반영	-	-	

* 고용보험료 신규지원자는 지원신청 이후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동시 취득신고 포함)를 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2018년도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18. 1. 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를 신규가입한 경우에 반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지원 신청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도탈서비스 (www.total.kcomwel.or.kr) 	전자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 	방문·우편 팩스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고용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문의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3. 소규모 사업장 추가 혜택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 드리는 추가 혜택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사업	구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30명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5명 미만 사업장 (제조·건설·운수·광업 : 10명 미만 사업장)
최대 7천만원 신용보증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 융자
5년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0%	대출금리	2.50%(고정금리)
연 0.8%	보증료	연 1.0%
전국 120개 신용보증재단 지정 ☎ 1588-7365	신청·문의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357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사업

- **지원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년 이내 보증신청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단, 개업하고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 신용보증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CD + 가산금리 - 2.5%(서울시 지원)
- **보증료** : 연 0.5%
- **신청·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 1577-6119



강원도 소재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을 받는 강원도 소재 사업장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신청** : 강원도 내 시·군청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 **문의전화** : (춘천시)250-3827, (원주시)737-2882, (강릉시)640-5210, (동해시)539-8524 (태백시)550-2103, (속초시)639-2268, (삼척시)570-3354, (홍천군)430-2841 (횡성군)340-2093, (영월군)370-2352, (평창군)330-2745, (정선군)560-2150 (철원군)450-4978, (화천군)440-2354, (양구군)480-2185, (인제군)460-2383 (고성군)680-3745, (양양군)670-2978

4. 사회보험 미가입신고 센터

생활주변에 있는 미가입사업장 발견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사업장이란?

- 사회보험 제도 및 보험가입 대상여부를 알지 못하여 미가입한 사업장
- 보험가입 대상임을 알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
- ※ 유의사항
 - 근로자 없이 가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가입 대상이 아님
 - 금융기관처럼 동일 사업주의 지점·영업소·출장소 및 공공기관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 ① 영수증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근로자 유무와 근무형태 등을 확인
- ② 미가입신고센터 접속하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소통과 참여 ▶ 국민연금가입지원 신고센터
- ③ 사회보험 가입여부 조회하여 미가입된 경우 '신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2018 두루누리 가이드북

사회보험료 해결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Chapter

II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 ▶ 온라인 검색창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http://insurancesupport.or.kr>)을 검색해보세요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자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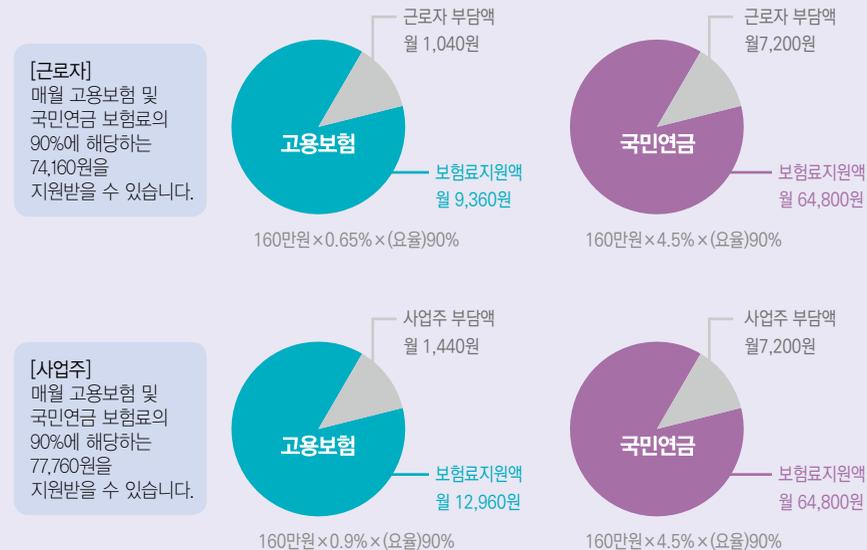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구분	근로자수	지원내용
신규지원자	5명 미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명 이상 10명 미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기지원자	10명 미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40%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금 산정 사례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인 신규지원자의 경우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 전자신고(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기가입 사업장 :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미가입 사업장 :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 서면신고

-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보험가입 여부	기성립 사업장	미성립 사업장
제출할 서류	1. 보험료지원신청서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 민원신청 ▶ '신청서 찾기' 클릭

▶ 찾아가는 서비스

-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등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락을 주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주요 업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NPS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 사회보험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9.>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우체사항 및 직장정보를 확인을 받고서 바르게 작성하여 우편을 남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123-45-67890-0			
명칭	북지상사	전화번호	062-123-4567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052-123-4568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우편번호: 44428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3 명	고용보험	3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3 명	고용보험	3 명
고용보험(건설업, 발목업)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김근로	723456-1234567	18,000,000원	1,500,000원	
박공단	823456-2345678	14,400,000원	1,200,000원	

더 많은 혜택주는
2018 두루누리 가이드북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절차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서식
- ★ 사업주 지원혜택 산정표

Chapter

III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 ▶ 온라인 검색창에서 **일자리 안정자금(<http://www.jobfunds.or.kr>)** ▼ 을 검색해보세요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 ▶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 사업장
 - 다만, 공동주택 포함 모든 경비 및 청소원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 지원 제외 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원 초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 30명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직원을 감원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상용근로자)**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일당 87,000원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이 운영하는 5명 미만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근로자 수 30명 미만 고용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

▶ 지원금 산정

주 40시간 이상,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 정액 지급 ※ 최저임금 인상분 12만 원 + 노무비용 지원 등 1만 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2만 원 •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9만 원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6만 원 • 10시간 미만 : 3만 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 22일 이상 : 13만 원 • 19일 이상 22일 미만 : 12만 원 • 15일 이상 19일 미만 : 10만 원

▶ 지원금 지급

▶ 직접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현금 지급)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 매월 10일, 20일, 30일 등 입금일자 선택 가능
-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금 산정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액에 따라 안분 (지원금 공제 후 차액 보험료 고지)

▶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 지원금 지급

- 다만, 공동주택이 용역업체에 위탁된 경우에는 용역업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한번만 신청하면 당해년도 계속 지급

- 사업장 계속 가동 및 근로자의 근무 여부, 고용유지 노력을 심사하여 지급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일용근로자 등)는 매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최초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 변경은 불가하며, 소급 신청(신청월 전전월 이전 지원금 신청) 사업주,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주, 공동주택,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별목업)은 직접 지급방식만 선택 가능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절차

▶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자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무료 대행신청)
- 신청 시기 : 연 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 내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고용-산재보험 업무 사무대행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서비스

Tip 전국 3,2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0명 미만 사업주는 무료로 업무 위탁 가능함
일자리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신청대행기관 찾기'에서 사무대행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름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서면 신청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서면 신청 가능
- 서면(방문·우편·팩스)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식

- 고용보험 적용(가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신청서식	<p>기존 고용보험 신청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기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p>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별도서식)</p>
첨부서류	<p>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18. 5월에 근로자 2인 지원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A(1월 입사), 근로자 B(3월 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A : 1월 임금대장 근로자 B : 3월 임금대장 	<p>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 <p>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 추가신고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신청

추가 신고

- 신규 입사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 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

변경 신고

- 사업장 및 지원받는 근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및 고용보험 변경사항 신고서 제출 병행
- 지원받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서식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 기가입 사업장(근로자) 신청서식

▶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 신청서식

▶ 지원대상 추가 신청서식

※ 지원대상 추가시 위 신청서로 신청(체크리스트 제외)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지원대상 추가시 위 신청서로 신청(체크리스트 제외)

공통 필요(첨부) 서식

▶ 공동주택관리 사업주(경비·미화원 등 용역제공업주 포함)

➤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혜택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신규직원자 1명 기준)**

월 평균 보수	일별보험료						사회보험료 지원금						납부할 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계	고용보험 (80%)		국민연금 (80%)		건강보험 (50%)		합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계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700,000	6,300	4,950	31,500	31,500	23,450	23,450	120,750	5,040	3,640	25,200	25,200	11,720	11,720	11,720	82,520	1,260	910	6,300	6,300	11,730	11,730	38,230
800,000	7,200	5,200	36,000	36,000	26,800	26,800	138,000	5,760	4,160	28,800	28,800	13,400	13,400	13,400	94,320	1,440	1,040	7,200	7,200	13,400	13,400	43,680
900,000	8,100	5,950	40,500	40,500	30,150	30,150	155,250	6,480	4,680	32,400	32,400	15,070	15,070	15,070	106,100	1,620	1,170	8,100	8,100	15,080	15,080	49,150
1,000,000	9,000	6,500	45,000	45,000	33,500	33,500	172,500	7,200	5,200	36,000	36,000	16,750	16,750	16,750	117,900	1,800	1,300	9,000	9,000	16,750	16,750	54,600
1,100,000	9,900	7,150	49,500	49,500	36,950	36,950	189,750	7,920	5,720	39,600	39,600	18,420	18,420	18,420	129,680	1,980	1,430	9,900	9,900	18,430	18,430	60,070
1,200,000	10,800	7,800	54,000	54,000	40,200	40,200	207,000	8,640	6,240	43,200	43,200	20,100	20,100	20,100	141,480	2,160	1,560	10,800	10,800	20,100	20,100	65,520
1,300,000	11,700	8,450	58,500	58,500	43,550	43,550	224,250	9,360	6,760	46,800	46,800	21,770	21,770	21,770	153,260	2,340	1,690	11,700	11,700	21,780	21,780	70,990
1,400,000	12,600	9,100	63,000	63,000	46,900	46,900	241,500	10,080	7,280	50,400	50,400	23,450	23,450	23,450	165,060	2,520	1,820	12,600	12,600	23,450	23,450	76,440
1,500,000	13,500	9,750	67,500	67,500	50,250	50,250	258,750	10,800	7,800	54,000	54,000	25,120	25,120	25,120	176,840	2,700	1,950	13,500	13,500	25,130	25,130	81,910
1,600,000	14,400	10,400	72,000	72,000	53,600	53,600	276,000	11,520	8,320	57,600	57,600	26,800	26,800	26,800	188,640	2,880	2,080	14,400	14,400	26,800	26,800	87,360
1,700,000	15,300	11,050	76,500	76,500	56,950	56,950	293,250	12,240	8,840	61,200	61,200	28,470	28,470	28,470	200,420	3,060	2,210	15,300	15,300	28,480	28,480	92,830
1,800,000	16,200	11,700	81,000	81,000	60,300	60,300	310,500	12,960	9,360	64,800	64,800	30,150	30,150	30,150	212,220	3,240	2,340	16,200	16,200	30,150	30,150	98,280
1,899,000	17,080	12,340	85,450	85,450	63,610	63,610	327,540	13,660	9,870	68,360	68,360	31,800	31,800	31,800	223,850	3,420	2,470	17,090	17,090	31,810	31,810	103,69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 13만원

[주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2만원 ■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9만원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6만원 ■ 10시간 미만: 3만원

[일용근로자] ■ 월22일 이상: 13만원 ■ 19~21일: 12만원 ■ 15~18일: 10만원

➤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혜택 (10명 미만 사업, 기직원자 1명 기준)**

월 평균 보수	일별보험료						사회보험료 지원금						납부할 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계	고용보험 (40%)		국민연금 (40%)		건강보험		합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계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700,000	6,300	4,550	31,500	31,500	23,450	23,450	120,750	2,520	1,820	12,600	12,600	-	-	-	29,540	3,780	2,730	18,900	18,900	23,450	23,450	91,210
800,000	7,200	5,200	36,000	36,000	26,800	26,800	138,000	2,880	2,080	14,400	14,400	-	-	-	33,760	4,320	3,120	21,600	21,600	26,800	26,800	104,240
900,000	8,100	5,850	40,500	40,500	30,150	30,150	155,250	3,240	2,340	16,200	16,200	-	-	-	37,980	4,860	3,510	24,300	24,300	30,150	30,150	117,270
1,000,000	9,000	6,500	45,000	45,000	33,500	33,500	172,500	3,600	2,600	18,000	18,000	-	-	-	42,200	5,400	3,900	27,000	27,000	33,500	33,500	130,300
1,100,000	9,900	7,150	49,500	49,500	36,950	36,950	189,750	3,960	2,860	19,800	19,800	-	-	-	46,420	5,940	4,290	29,700	29,700	36,950	36,950	143,330
1,200,000	10,800	7,800	54,000	54,000	40,200	40,200	207,000	4,320	3,120	21,600	21,600	-	-	-	50,640	6,480	4,680	32,400	32,400	40,200	40,200	156,360
1,300,000	11,700	8,450	58,500	58,500	43,550	43,550	224,250	4,680	3,380	23,400	23,400	-	-	-	54,860	7,020	5,070	35,100	35,100	43,550	43,550	169,390
1,400,000	12,600	9,100	63,000	63,000	46,900	46,900	241,500	5,040	3,640	25,200	25,200	-	-	-	59,080	7,560	5,460	37,800	37,800	46,900	46,900	182,420
1,500,000	13,500	9,750	67,500	67,500	50,250	50,250	258,750	5,400	3,900	27,000	27,000	-	-	-	63,300	8,100	5,850	40,500	40,500	50,250	50,250	195,450
1,600,000	14,400	10,400	72,000	72,000	53,600	53,600	276,000	5,760	4,160	28,800	28,800	-	-	-	67,520	8,640	6,240	43,200	43,200	53,600	53,600	208,460
1,700,000	15,300	11,050	76,500	76,500	56,950	56,950	293,250	6,120	4,420	30,600	30,600	-	-	-	71,740	9,180	6,630	45,900	45,900	56,950	56,950	221,510
1,800,000	16,200	11,700	81,000	81,000	60,300	60,300	310,500	6,480	4,680	32,400	32,400	-	-	-	75,960	9,720	7,020	48,600	48,600	60,300	60,300	234,540
1,899,000	17,080	12,340	85,450	85,450	63,610	63,610	327,540	6,830	4,930	34,180	34,180	-	-	-	80,120	10,250	7,410	51,270	51,270	63,610	63,610	247,4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 13만원

[주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2만원 ■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9만원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6만원 ■ 10시간 미만: 3만원

[일용근로자] ■ 월22일 이상: 13만원 ■ 19~21일: 12만원 ■ 15~18일: 10만원

더 많은 혜택주는
2018 두루누리 가이드북

고용보험·국민연금 혜택은?

1. 고용보험 혜택
2. 국민연금 혜택

Chapter

IV

1. 고용보험 혜택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주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

지원내용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시간제 근로자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운영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 지원

지원내용

- 공공형 민간보육시설에 준하여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근로자 지원

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취업훈련을 실시합니다.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 지원)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 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발생
 -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환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아빠의 달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둘째아이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 보험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480만원 한도, 다테아 일 경우 120일, 64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혜택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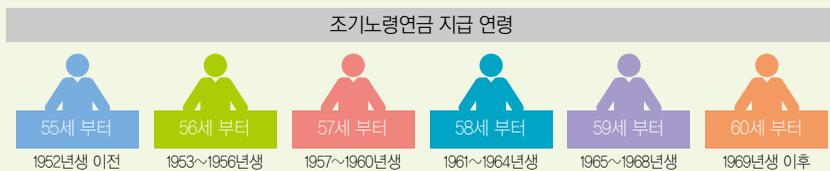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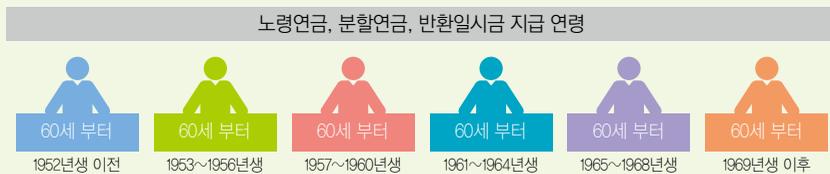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급~3급)과 한꺼번에 지급하는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65세)에 도달하는 때부터 평생 연금이 지급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남는 때에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유족연금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연금(일시금) 수령 시 소득세법에 의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현재 노령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집니다.



*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대상도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이 달라짐

▶ 연금액 산정방법

연금지급액

기본연금액(×연금종류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실제 지급시에는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함



▶ 기본연금액

- 기본연금액은 ①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소득재분배 기능), ②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소득비례 기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 20년 가입시 기본연금액 100% 지급
-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 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배우자
연 252,090원



자녀·부모
연 168,020원(1인당)

19세 미만* 자녀, 61세(~65세) 이상 부모,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부모

* 2015년 7월부터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 2017년 4월~2018년 3월까지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이며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됨

노령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지급개시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p>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60세~65세)이 되신 분에게 평생 동안 지급</p> <p>연금액 기본연금액 × (50%~)* + 부양가족연금액 <small>*가입기간이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small></p>
조기 노령연금	<p>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청구하면 평생 동안 지급 <small>※ 청구시기에 따른 감액률로 평생동안 감액하여 지급</small></p> <p>연금액 기본연금액 × (50%~)* × (70~99.5%)* + 부양가족연금액 <small>*지급개시연령 5년 전 청구시 30% 감액, 청구연령이 1개월 증가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 0.5%씩 증가</small></p>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p>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p> <p>연금액 기본연금액 ×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 금액* <small>*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시 소득월액에 따라 1/2한도로 감액</small></p>
분할연금	<p>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p> <p>연금액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 <small>주)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에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small></p>

장애연금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던 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결정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애등급 결정사례 |

장애 1급	
장애 1급 판정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됨
장애 2급	
장애 2급 판정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인정 조건에 해당된 경우
장애 3급	
장애 3급 판정	사고로 한 손의 첫째 및 둘째 손가락이 잘림

*완 치 :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초진일 : 장애 또는 사망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장애연금액 및 지급기간

장애 1급~3급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



▶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아래 해당자가 사망한 때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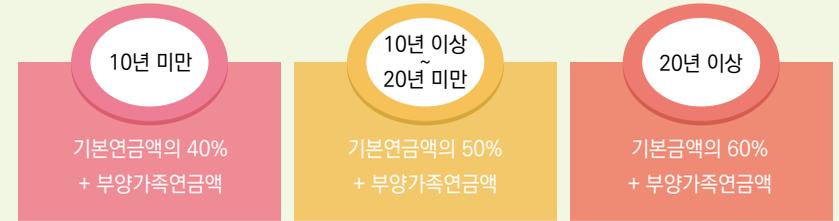
사망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순위	지급대상	대상자요건
1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또는 장애요건 등 제한 없음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유족연금액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



※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분이 60세(~65세)가 된 경우
※ 각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분)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액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사망일시금액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2018 두루누리 가이드북

알면 도움 되는 TIP!

1.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
2. 퇴직연금제도
3. 산재보상 서비스
4.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Chapter

V

1.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 혼례비

신청대상 용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세금 공제 전) 이하인 근로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용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용자한도 1,250만원 범위 내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자녀학자금

신청대상 혼례비와 동일

용자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대안학교 제외)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의료비

신청대상 혼례비와 동일

용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용자신청 가능)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임금체불생계비

신청대상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부부합산)이 4,42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용자요건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용자신청 가능)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부모요양비

신청대상

혼례비와 동일

용자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장례비

신청대상

혼례비와 동일

용자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용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용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72만원 이하일 것

용자요건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용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중이고 용자 대상 월소득이 172만원 이하일 것

용자요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 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용자대상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용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근로자 휴양 콘도 및 공공보육시설 지원

> 근로자 휴양 콘도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 휴가, 휴식 활용기회 제공

사업내용

이용대상

- 평일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주말·성수기 : 월평균소득이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보유콘도

-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8개 회사 702구좌) (한화, 대명, 쉐스톤, 일성, 금호, 리솜, 토비스, 금강산)

이용요금

- 1박 기준 55,000원~180,000원

이용방법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휴양콘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결과 문자 안내 및 이용대상자는 콘도 이용권 이메일 발송
- 콘도이용 후 객실료 현지 지불

>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목적

기혼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근로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입소대상자

- 근로자 및 일반주민의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입소순위

1 순위	부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2 순위	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3 순위	부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4 순위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 동 순위자 중 우선입소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보육사업 안내) 준용

보육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야간연장교육
보육시간	07:30~19:30	07:30~15:30	19:30~22:30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 가능

운영 지역(24개소)

- 수도권(9개소): 모이래(구로), 인천, 남동, 수원, 부천, 군포, 안산, 고양, 동해
- 영남권(7개소): 부산, 창원, 울산, 진해, 대구, 포항, 경주
- 호남권(4개소): 군산, 광양, 정읍, 제주
- 대전권(4개소): 대전, 수안틀(청주), 천안, 세종

월보육료

-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목적

여성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 80, 90%로 차등지원

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
		공동	시설전환비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40%)
			공동	시설전환비	
		컨소시엄형 산업단지형	시설전환비	10억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20억원	
대규모 기업	공동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	
			교재교구비 (교체비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소요비용의 90%, 최대 1억원 무상지원 가능

※단독, 공동,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가능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22억원 지원 가능

▶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사업

사업목적	직장어린이집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용자용도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 여성고용친화시설 : 모유 착유(수유) 시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근로자 전용시설
용자조건	한도 7억원, 이율 연 1~2%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금융기관 대부조건에 따름

▶ 근로자 지원 TIP!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2.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30명 이하 모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DC형)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은?

- **믿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 **저렴합니다** : 낮은 운용관리수수료(0.1%, 자산관리수수료 별도)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간편합니다** : 복잡한 서식과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신성외재**에서 적립금 자산을 관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 궁금하시면!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지원센터 ☎ 1661-0075
- 인터넷 검색창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조회 및 온라인 신규가입 상담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산재보상 서비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상 서비스 절차

▶ 산재발생 / 치료중



▶ 치료종결



"맞춤형통합서비스"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를 직업복귀 취약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업무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 보조기 및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지급

상병 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제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제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 재활급여

-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을 원직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였던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4.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2018. 1. 1. 이후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 2017. 12. 31.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가능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배경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택시·비택시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① 취업과 관련하여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는 받는 행위
-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유의사항

- 출퇴근 사고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사고 사실 입증·확인이 쉬워집니다.
-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보험사 등)과 합의를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퇴근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산재 신청하나요?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할지사 및 산재 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출퇴근재해 관련 FAQ

Q.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언제부터 산재보상이 되나요?

2018.1.1.이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부터 산재보상이 됩니다.
(2017.12.31.이전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 보상 가능)

Q. 출퇴근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 *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Q.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보상이 되나요?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됩니다.
(예시: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

Q.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Q.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 위탁, 병원진료 또는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Q.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받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업훈련학교에서 제과제빵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출퇴근길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병원 진료는 독감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는 경우, 가족간병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부모님을 간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주는 2018 두루누리 가이드북

발행일	2018년 3월
발행처	근로복지공단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연락처	1588-0075 www.kcomwel.or.kr
디자인	협진인쇄 052-256-5501

더 많은
선택주는

2018

두루누리 가이드북